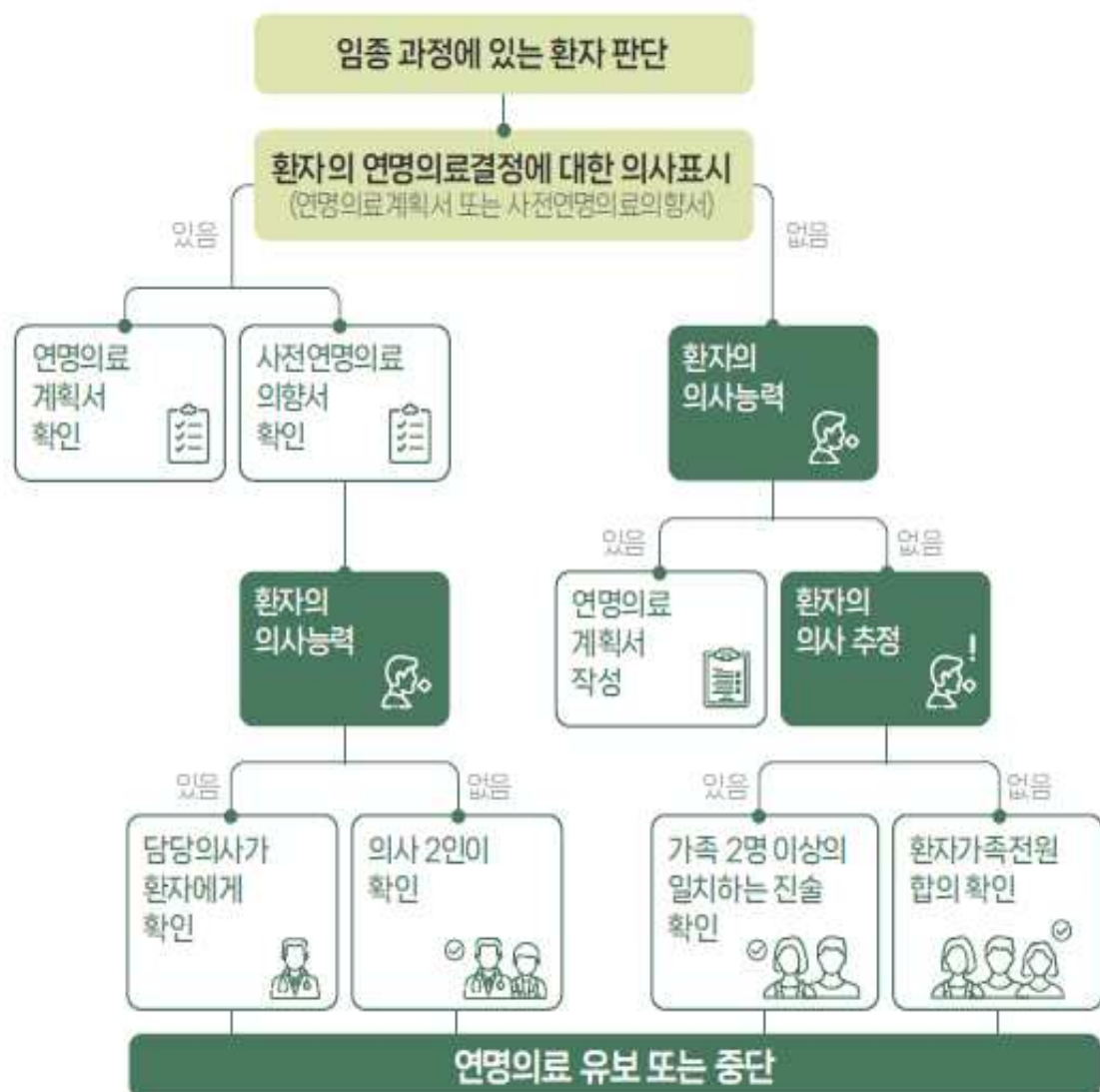


[참고자료]

참고1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절차



※ 환자 가족의 범위: ① 배우자, ② 1촌 이내의 직계 존·비속,

③ 2촌 이내의 존속비속(①, ②가 없는 경우), ④ 형제·자매(①~③이 없는 경우)

※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?

(누가)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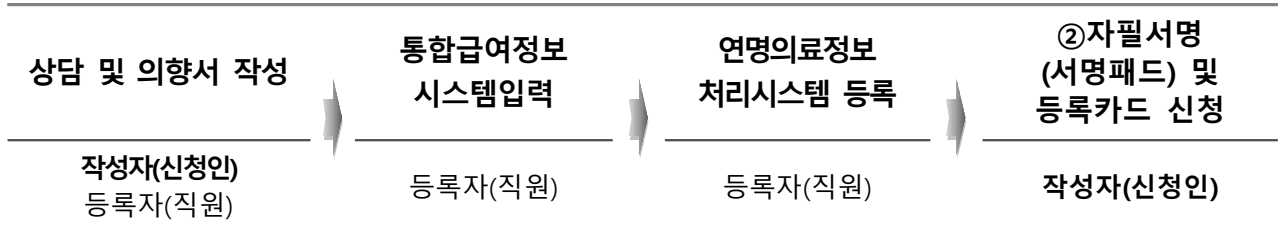
(어디서)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

(무엇을) 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'회생 가능성이 없고,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,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' 인지 판단합니다.

참고2

공단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절차 현황 (내방등록)

□ 등록절차 및 관련 확인사항



- (상담 및 의향서 작성) 사전연명에 대한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, 작성자로부터 6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 받아야 함

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설명사항

1.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
2.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
3.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
4.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·등록·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
5.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·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
6. 등록기관의 폐업·휴업 및 지정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

- (미인정 사례) 사전의향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

1.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
2.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
3. 작성 전 등록기관이 설명해야 할 내용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

-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 상담 (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☎1855-0075)

《찾아가는 상담 종류》

- ① 현장방문상담(기관 및 시설방문, 지역사회 방문으로, 반드시 1:1상담 원칙)
- ② 출장방문상담(가정방문 등) → 장애인·고령자 등 등록기관 방문이 어려운 대상으로 작성자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인지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작성가능

* 반드시 등록기관의 관리자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접수된 방문요청 건에 대해서만 가능